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19.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10. 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지출을 전년 대비 43.9조원(9.3%) 증액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공고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 예산안 개요 / 1

- 1. 현 황 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

II. 개별 사업 분석 / 4

-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정책연구 사업 개선 필요 4

[대통령경호처]

I. 예산안 개요 / 9

- 1. 현 황 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1



CONTENTS

Ⅱ. 개별 사업 분석 / 12

- 1.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2

[국회]

I. 예산안 개요 / 17

- 1. 현 황 1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

Ⅱ. 개별사업 분석 / 21

-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1

[국가인권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27

- 1. 현 황 2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9



CONTENTS

II. 개별사업 분석 / 30

- 1.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30
- 2.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단계적 추진 필요 34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I. 예산안 개요 / 41

- 1. 현 황 4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5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6

II. 주요 현안 분석 / 48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개선 사항 48
 - 1-1. 기금 수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9
 - 1-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 52
- 2.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 55
 - 2-1. 교도작업 정역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56
 - 2-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조정 필요 59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62

- 1. 전자공증 이용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62
- 2. 난민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65
- 3. 치료감호소 유희병동 활용을 위한 노력 필요 68
- 4. 대체복무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70
- 5. 추징금 등 범죄수익환수 노력 강화 필요 73

[법제처]

I. 예산안 개요 / 79

- 1. 현 황 7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8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1

II. 개별 사업 분석 / 82

- 1.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82
- 2.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85



CONTENTS

[감사원]

I. 예산안 개요 / 89

- 1. 현 황 8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1

II. 개별 사업 분석 / 92

- 1.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92

[대법원]

I. 예산안 개요 / 97

- 1. 현 황 9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1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2

II. 주요 현안 분석 / 104

- 1. 대법원 신규 정보화사업 분석 104
 - 1-1.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 108
 - 1-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원 운용 문제 111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115

- 1.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지급 기준 정비 등 필요 115
- 2. 상근조정위원제도 확대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118

[헌법재판소]

I. 예산안 개요 / 125

- 1. 현 황 12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27

II. 개별 사업 분석 / 128

- 1. 청사증축 연계사업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등 필요 128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현황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2.4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9억원(158.5%) 증가하였다.

[2020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10	94	94	243	149	158.5

주: 총계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99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4억원(5.8%) 증가하였다.

[2020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6,201	93,669	93,669	99,063	5,394	5.8

주: 총계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2020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019년 추진했던 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등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예산이 감액되었고(2019년 15억원 → 2020년 5억원), ② 청와대 노후시설에 대한 연차별 개보수를 위해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이 증액되었다(2019년 48억원 → 2020년 66억원).

2020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실적 부진은 2020년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별도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정책연구의 고유한 영역과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를 전제로 정책연구비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정책환경에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정책연구 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세부사업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1개인데 청와대 노후시설 연차별 개보수 추진을 위해 증액되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시설관리 및 개선	4,782	4,782	6,593	1,811	37.9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가. 현 황

국정운영관리 사업¹⁾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 등 국정운영 수행평가 등을 통한 올바른 정책방향 정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49억 1,200만원이다. 동 사업에는 일반연구비(260-01목)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23억 5,200만원, 정책연구비(260-02목)가 전년 대비 20% 감액된 2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국정운영관리 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정운영관리	5,418	4,491	4,491	4,912	421	9.4
일반연구비(260-01)	2,011	2,352	2,352	2,352	0	0
정책연구비(260-02)	189	300	300	240	△60	△20.0
일반수용비(210-01)	925	1,190	1,190	1,610	420	35.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등	389	67	67	78	11	16.4
일반용역비(210-14) 등	35	80	80	80	0	0.0
사업추진비(240-01)	469	502	502	502	0	0.0
자산취득비(430-01)	1,400	0	0	50	50	100.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나. 분석의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별도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정책연구의 고유한 영역과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를 전제로 정책연구비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정책연구 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020년도 국정운영관리 사업에 편성된 연구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일반연구비(260-01목)는 여론조사 경비 17억 9,400만원 등²⁾ 23억 5,200만원이고, 정책연구비(260-02목)는 정책과제 연구용역 2억 4,000만원이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정책연구비는 2017년도 이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의 경우 탄핵 정국과 새 정부 출범으로 상반기의 집행여건이 불안정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7년도 23.7%의 집행률은 저조한 수준으로 보이며, 집행여건이 정상적인 상황에 접어든 2018년도에도 63%에 머물렀다.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19.3% 수준인 5,8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계약액과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계약 예정액을 합한 전체 집행 예상액 1억 7,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책연구비 집행실적은 예산현액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정운영관리 사업 정책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9월말 현재)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정책연구비	270	64	300	189	300	58

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액 5,8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계약액과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계약 예정액을 합한 금액은 1억 7,700만원이다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기관 특성상 정책용역 등 추진 소요가 유동적이어서 다음연도 추진소요를 정확

2) 국정운영 및 성과컨텐츠 제작 5억 2,800만원, 뉴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3,000만원

히 예측하거나 당초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 정책연구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제시하는 집행실적 부진의 사유와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 현황에 따르면, 예산의 일부 감액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실적 부진은 2020년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실적 부진은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예산의 일부 감액과 같은 임시방편적 조치 외에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정책연구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등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바, 국정의 각 분야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과 별도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정책연구의 고유한 영역과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를 전제로 정책연구비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정책환경에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정책연구 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

1

현황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1.6%) 증가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11	123	123	125	2	1.6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923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7,700만원(4.2%) 증가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9,702	88,639	88,639	92,316	3,677	4.2

자료: 대통령경호처

한편,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0년도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경호활동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년 동액으로 편성하였으며, ② 과거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에도 일부 편성해오던 경호안전교육원 소관 사업비(약 3억원)를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으로 일원화하였다(「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증액 2019년 20.8억원 → 2020년 23.8억원).

2020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의 상용임금 예산 집행실적 부진은 공무원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 및 퇴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원 해소를 위한 채용은 일시적 방편에 그치고 2020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상용임금 예산의 집행실적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2020년도 신규사업 및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다.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¹⁾은 대통령경호처 기관 운영을 위한 정상적 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억 5,700만원이다. 동 사업에는 상용임금(110-03목)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31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4,047	5,513	5,513	5,757	244	4.4
상용임금(110-03목)	1,996	3,142	3,142	3,142	0	0.0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분석의견

상용임금 예산 집행실적 부진 문제는 2020년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상용임금은 대통령경호처 본부와 경호안전교육원의 조경, 경비, 청소 및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인데,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11-201

살펴보면, 2017년 및 2018년 집행률이 70%대로 저조하였고, 2019년에도 8월말 현재 집행률이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3년간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 지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8월말 현재)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대통령경호처 본부	893	712	79.7	1,800	1,279	71.1	1,924	932	48.4
경호안전교육원	856	599	70.0	1,042	717	68.8	1,218	503	41.3
합계	1,749	1,311	75.0	2,842	1,996	70.2	3,142	1,435	45.7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근로자는 2018년도에 연중 월별 지급인원이 정원 79명 대비 75명 수준으로 4명 정도의 인원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대통령경호처는 2019년도에 공무원 근로자 정원을 19명 증원하여 정원 98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²⁾ 8월말 현재 월평균 지급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72명에서 76명 수준으로 예산편성기준 인원인 정원 98명 대비 연중 20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정원 증원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결원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도(8월말 현재)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 월별 지급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지급인원	-	74	74	72	76	76	73	72	-

주: 매월 집행액은 전월에 대한 급여로 1월에는 상용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자료: 대통령경호처

2)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2019년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근로자 정원 증원은 경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기존 일반직공무원의 업무를 공무원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근로자의 이직 및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충원을 위한 채용절차를 결원 발생 시마다 즉시 진행하기 어렵고, 신규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반 행정기관에 비하여 그 과정이 엄격하여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2019년말까지 공무원 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결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상용임금 예산 집행실적 부진은 공무원 근로자의 잦은 이직 및 퇴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원 해소를 위한 채용은 일시적 방편에 그치고 2020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상용임금 예산의 집행실적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

1

현황

국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회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34억 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억 500만원(30.9%) 증가하였다.

[2020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211	2,601	2,601	3,406	805	30.9

자료: 국회

국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6,711억 1,1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02억 700만원(4.7%) 증가하였다.

[2020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61,470	640,904	640,904	671,111	30,207	4.7

자료: 국회

한편, 국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2020년도 국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제21대 국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정활동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21대국회 개원경비를 편성하였고, ② 언론 및 정부부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의 개관에 따라 운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③ 의정활동 지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DB 구축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④ 국회활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2020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31억원 규모이다.

제21대국회개원경비 사업은 제21대국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자료보존관운영 사업은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개원을 대비하여 모빌렉 서가 설치, 이관자료 색출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국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제21대국회 개원경비	2,577
	자료보존관운영	526
합 계		3,103

자료: 국회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언론·공보활동및헌정기념관운영, 의회경호및방호, 국회도서관자료보존관건립, 전자도서관운영 등이 있다.

① 언론·공보활동및헌정기념관운영 사업은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리뉴얼 실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증액되었고, ② 의회경호및방호 사업은 국회경비대 대체인력운용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 스마트워크센터 경비 인력 운용 경비 등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③ 국회도서관자료보존관건립 사업은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3차년도 공사비가 증액 반영되었고, ④ 전자도서관운영 사업은 자료관리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및 전자도서관DB구축 사업의 규모 확대에 인하여 증액되었다.

[국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개)	국제회의	1,778	1,778	2,488	710	39.9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	1,822	1,822	3,187	1,365	74.9
	의회경호및방호	2,895	2,895	4,487	1,592	55.0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7,996	7,996	12,911	4,915	61.5
	의회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128	128	231	103	80.5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16,090	16,090	25,570	9,480	58.9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회

II

개별사업 분석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¹⁾은 국회도서관의 자료보존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국가지식정보 역량 확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타당성 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총 사업기간은 2016 ~ 2020년이었으나, 부지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1년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의 2020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61.5% 증가한 129억 1,100만원이다.

[2020년도 자료보존관 건립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2,776	7,996	7,996	12,911	4,915	61.5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이 사업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035-500

국회는 당초 2016~2019년 총사업비 397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에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건립부지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내용의 변경과 이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여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총사업비는 실소요를 반영하여 417억 5,600만원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계획]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건립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시민공원 내)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 내 근린공원 부지(3633번지 외 1필지)
건립규모	· 대지면적: 10,000㎡ · 연 면 적: 13,400㎡	· 대지면적: 32,000㎡ · 연 면 적: 13,661㎡
총사업비	· 397억 4,300만원	· 417억 5,600만원
추진경과 및 계획	<국회도서관> · '14.10.~'15.12. 건립계획안 수립	<국회도서관> · '14.10.~'15.12. 건립계획안 수립 · '15.12.~'16.3. 건립부지 선정 (부지변경: 시민공원→국제신도시)
	<국회사무처> · '16.1.~4. 기본계획수립 용역 · '16.5.~7. 설계업체 선정 · '16.8.~'17.7. 기본 및 실시설계 · '17.8.~12. 시공업체 선정 · '18.~'19. 공사실시	<국회사무처> · '16.4.~9. 기본계획수립 용역 · '16.9.~12. 설계업체 선정 · '17.1.~12. 기본 및 실시설계 · '18.3. 입찰방법 심의 · '18.4.~12. 시공업체 선정 · '19.~'21.8 공사실시 및 완료예정

자료: 국회

동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24억 5,000만원²⁾을 편성하였으나, 건립부지 변경 등에 따른 설계기간 부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17억 1,300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다. 2017년에는 이월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17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 예산액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4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1,300만원을 이월, 5억 4,300만원을 불용하여 총 사업비 규모와 차이가 있다.

2018년에는 부지매입과 공사·감리 등을 위한 6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4억 8,300만원을 이월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년 7월말 현재 실집행률은 2.8%에 불과하여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액도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계획 당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2019년에 2020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202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다.

[자료보존관 건립사업 계획 및 공정별 총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 설계용역 추진	부지매입 완료 및 사업자 선정	시공업체 계약(19.3월) 공사 추진 (2019.3월~2021.8월, 30개월)		
예산	부지매입비			2,773			
	설계비	94	1,713(이월)		287		
	공사비			3,079	7,200	12,480	12,480
	감리비			392	368	409	408
	시설부대비			15	15	22	21
	합계	94	1,713	6,259	7,870	12,911	12,909

자료: 국회

[자료보존관 건립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년도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7	0	1,713(이월)	1,713	100	0	0
2018	6,268	6,268	2,776	44.3	3,483	9
2019.7월말	7,996	11,479	320	2.8	-	-

자료: 국회

이에 대해 국회는 부지변경 등으로 사업절차상 순연이 발생하여 2019년 3월에야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사준비기간 소요로 인해 6월에서야 착공된 데 기인한 문제로 2021년 8월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9년 9월 말 현재 공정률이 9.9%이므로 국회는 동 건립 사업이 연장된 사업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 현 황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천 2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00만원(29.4%) 감소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7	17	17	12	△5	△29.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378억 8,700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2억 400만원(3.3%) 증가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0,085	36,683	36,683	37,887	1,204	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019년 e-진정시스템구축에 따라 정보화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2019년 26억 1,900만원 → 2020년 17억 9,400만원), ② 사이버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권도서관 확장 예산 등을 신규편성함에 따라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고(2019년 12억 3,600만원 → 2020년 18억 2,500만원)), ③ 혐오차별 개선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예산이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근거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국가인권통계 사업 예산의 적정성 및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북한인권 개선 등이 있다.

①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은 대전인권체험관 이전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②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은 인권도서관 확장 내역사업과, 제주인권교육센터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③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실태조사 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지역인권문화 확산	334	334	468	134	40.1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236	1,236	1,825	589	47.7
	북한인권 개선	153	153	223	70	45.8
합계		1,723	1,723	2,516	793	46.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인권의식 증진 사업¹⁾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권감수성 제고 캠페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홍보, 인권문화콘텐츠 개발·보급, 인권의 날 행사개최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제고 및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0억 700만원이다. 전년도 예산 중 인권의 프리즘으로 보는 대한민국 100년 내역사업 예산 3억원이 순감하였으나, 내역사업 중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홍보사업 예산이 2억원 증가했고 인권문화콘텐츠 개발·보급사업 역시 1억 2,000만원 증가한 3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인권의식 증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인권의식 증진	700	987	987	1,007	20	2.0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201	223	223	343	120	53.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it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나. 분석의견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보급사업의 성과저조 원인분석 및 대안 등에 근거한 사업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제를 형성하고 인권감수성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교재로 활용할 목적으로 인권콘텐츠를 제작 및 보급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웹드라마 제작 및 보급사업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²⁾ 현재 2018년도에 제작한 6부작 웹드라마 ‘진정하세요’가 2018년 12월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게시되고 있고, 2019년도에도 다른 웹드라마가 제작 중이다. 2020년 예산안에도 제작 및 미디어플랫폼 이용료로 예산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인권문화 콘텐츠개발·보급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웹드라마 및 인권영화 제작·보급	- 웹드라마 제작 200 - 웹드라마 및 인권영화 DVD제작 13 - 찾아가는 인권영화관 10	223
인권콘텐츠 개발 및 제작	- 연구용역 심사비 및 제작 자문 외 67.2 - 콘텐츠 제작 30 - 인권콘텐츠 활용: 세미나 개최비 22.8	120
합 계		34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목적은 정책, 제도 등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당 웹드라마를 조회하고 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2018년 제작한 웹드라마 ‘진정하세요’의 조회수를 보면 2019년 9월말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14편의 인권영화를 제작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인권영화 대신 웹드라마 제작으로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였다. 단, 2017년부터 제작에 착수한 영화 ‘메기’는 2019년 9월 26일 개봉하여 현재 140여 개 극장에서 상영 중이어서 보급 예산은 영화와 웹드라마 모두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동 콘텐츠를 제시한 N사의 편당 평균조회수가 738건(예고편 포함 총 7편 재생수 4,938건)으로 시청기록이 상당히 저조하다.

[제작완료된 웹드라마 조회 수(2019.9월말 기준)]

(단위: 건)

제작물 명	미디어플랫폼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2018년 진정하세요 (방영 '18.12)	N****	1,204	1,040	740	518	368	562

이는 유사기간에 발표된 다른 정부부처들의 웹드라마 조회수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웹드라마의 흥행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주제에 대한 공감, 극의 흥미성, 크로스미디어 편성전략³⁾ 등이 조회 및 재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타기관 제작 웹드라마 현황 예시]

기관	웹드라마명 (방영시작일)	제작목적	편당 평균재생수 (총 편수) ¹⁾
교육부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19.04)	2019년 개정된 학교종합생활기록부 관련 정책 설명과 홍보	N**** 7,625 (총 1화)
행정안전부	(안전TV) 안그래도 전부터 (2018.09)	안전관련 정보제공 및 안전예방 공감 확산	Y***** 75,504 (총 5화)
국방부(해군)	출항 5분전 (2018.09)	해군의 임무와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Y***** 43,911 (현재 1편만 방영)
국방부(육군)	백발백중 시즌4 (2019.05)	선진화된 신 병영문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N**** 294,952 (현재 6편 방영중)

주: 1) N사를 통해 별도 방영되지 않은 콘텐츠는 Y사 재생수를 기재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3) 강여경·임성준·양옥빈. 한국 웹드라마의 흥행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략경영연구. 2018. 21(3): 1-28.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고 2019년 작품의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에도 동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성과저조의 원인과 타 기관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사업¹⁾은 국가인권통계 생산을 통해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인권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9년 신규내역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가인권통계사업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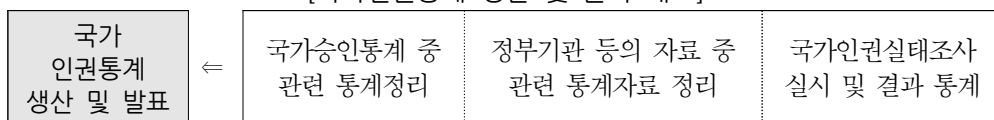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84	1,184	1,184	1,215	31	2.6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0	600	600	690	90	1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통계는 기존 국가 승인통계 및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얻은 통계표와 ‘국가인권실태조사’로 명명되는 정기적 사회조사를 구성요소로 하여 우리나라 인권 상황을 객관적,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개요]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예산을 통해 기존 국가승인통계 내역 중 인권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역을 정리하고 인권실태조사 문항 개발 후 2019년 8월말 현재 설문조사(2019.08.20.-2019.09.02.)를 시행 하였다.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2019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내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예산안에 총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실태조사 조사대행비 5억 8,000만원,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그리고 보고대회 1회 개최비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내역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국가인권통계조사	국가인권실태조사(서베이) 조사대행*1식	580
국가인권통계 조사 및 분석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1식	100
보고대회	보고대회 1회	10
합 계		69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첫째, 국가인권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조사는 조사문항의 수, 표본추출 방식, 조사방법 등에 따라 적정 비용이 산출된다. 2019년 조사를 기준으로 동 조사는 총 142개 문항에 대해, 층화표본추출방식으로 추출한 7,600가구를 표본으로 하며 응답자 수는 13,000여 명 규모이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 사회조사 사업의 예산과 비교해볼 때 조사비용 계상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통계청 조사대행을 통해 실시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경우 사업체 기준 층화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여 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항 수는 57개 수준이다. 동 사업의 기초결과 분석 및 보고 등의 제반비용을 합한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9,000만원이다.

사회소외계층을 별도 표본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격차실태조사는 층화비례표본추출에 의해 사회계층별로 선정된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문항은 137개 수준이다. 동 사업은 기초결과 분석 및 보고 등의 제반비용을 합한 예산이 매년 5억원으로 편성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수행하고 결과분석을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며, 소상공인실태조사는 답례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통합조사의 일부분으로 수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향후 민간기업 활용을 고려하는 만큼 2020년도 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면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에 대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기관의 실태조사도 기술통계 및 기본결과는 조사대행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 연구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 분석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다.

둘째, 국가인권통계 결과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역시 2019년에는 새로운 실태조사 문항개발 및 지표 탐색이 필요하여 1억원의 예산소요가 있었으나, 2020년에는 실태조사 결과분석, 기존 통계의 정리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2020년 예산안에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통계자료 공개 및 보고대회가 개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상황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료분석과 보고만으로 한계가 있다. 자료의 타당성·신뢰도 확보와 함께 학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동 자료를 이용하여 다각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19년 조사자료와 성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계획도 동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축한 자료의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부부

가. 총수입·총지출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7,026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4억원(0.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6,235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752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9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449,621	1,689,510	1,689,510	1,698,640	9,130	0.5
- 일반회계	1,383,607	1,614,363	1,614,363	1,623,473	9,110	0.6
- 교도작업특별회계	66,014	75,147	75,147	75,167	20	0.0
기 금	3,173	1,707	1,707	3,931	275	7.5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173	1,707	1,707	3,931	275	7.5
합 계	1,452,794	1,691,217	1,691,217	1,702,571	9,405	0.6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조 4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9억원(4.3%)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조 8,76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705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7억원이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2020년도 예산안 법무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657,155	3,784,382	3,784,382	3,947,185	162,803	4.3
- 일반회계	3,591,932	3,713,941	3,713,941	3,876,641	162,700	4.4
- 교도작업특별회계	65,223	70,441	70,441	70,544	103	0.1
기 금	89,378	95,643	95,643	100,715	5,072	5.3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9,378	95,643	95,643	100,715	5,072	5.3
합 계	3,746,533	3,880,025	3,880,025	4,047,900	167,875	4.3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법무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7,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0.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6,235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72억원이다.

[2020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83,607	1,614,363	1,614,363	1,623,473	9,110	0.6
교도작업특별회계	118,233	126,817	126,817	127,177	360	0.3
합 계	1,501,840	1,741,180	1,741,180	1,750,650	9,470	0.5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1억원 (4.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9,591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72억원이다.

[2020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67,870	3,796,381	3,796,381	3,959,081	162,700	4.3
교도작업특별회계	110,222	126,817	126,817	127,177	360	0.3
합 계	3,778,092	3,923,198	3,923,198	4,086,258	163,060	4.2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법무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법무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억원 (2.4%) 증가하였다.

[2020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5,563	101,102	101,102	103,543	2,441	2.4

주: 1. 총계 기준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법무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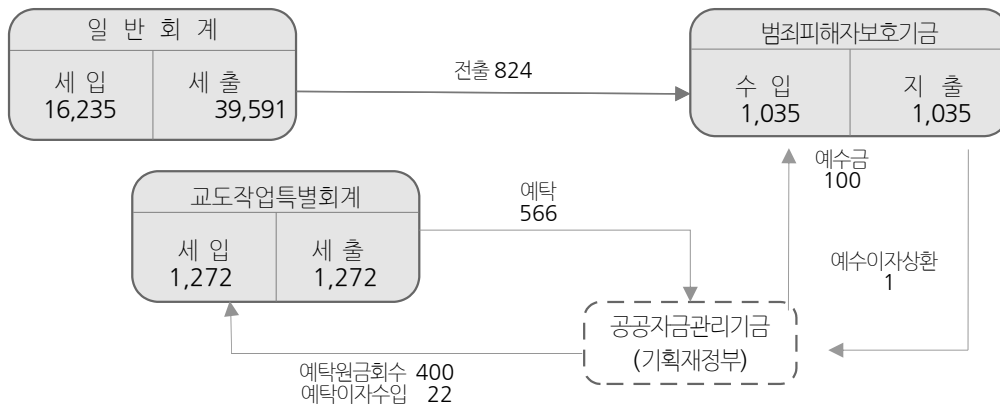
2020년도 예산안의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24억원이 전출된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66억원을 예탁하며, 예탁원금 회수 40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22억원이 발생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824억원이 전입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0억원을 예수하며, 1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법무부

2020년도 법무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유해약물 확인검사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고(2019년 9억원 → 2020년 20억원), ②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18개 지검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론스타, 게일 등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2019년 30억원 → 2020년 70억원). 또한 ③ 전국 12개 교정시설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시설 마련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고, 수용자 건강보험부담금 현실화, 소년원생 의료처우 강화 및 교정시설 공공요금 현실화 등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2019년 970억원 → 2020년 1,370억원), ④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스마일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 범죄피해자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예산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2019년 122억원 → 2020년 164억원).

2020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요 재원인 벌금 수납액이 감소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법」에 따라 작업 의무가 부여된 수형자 중 일부가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작업장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화상공증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증 이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공증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400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여러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는 출입국·외국인 업무 관련 정보화 예산을 통합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출입국·이민행정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의 확충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 사업(R&D)은 형사사법 시스템상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증거 획득·분석·검증체계 기반 구축, 미래 분석기법 표준화,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검증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은 헌법재판소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2019. 12. 31.까지 잠정 적용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체복무 인원의 합숙 및 교육시설 조성 및 대체복무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736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 사업(R&D)	1,375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25,926
합 계		40,037

자료: 법무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회통합 프로그램이수제 운영, 국제형사협력지원(ODA),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등이 있다.

①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론스타, 게일 등 우리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비용이 반영되었고,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사업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일원화에 따른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국제형사협력지원(ODA) 사업은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등 국제부담금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사업은 재산형 집행 및 범죄수익 추적 환수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⑤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은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자 건강보험부담금 현실화, 급식비 등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개)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3,017	3,017	4,750	1,733	57.4
	통일 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504	504	742	238	47.2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7,388	7,388	9,936	2,548	34.5
	국제형사협력지원(ODA)	743	743	2,696	1,953	262.9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1,481	1,481	2,197	716	48.3
	교도소 행정지원	30,178	30,178	40,005	9,827	32.6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05,740	205,740	220,216	14,476	7.0
	행정서비스 지원 인력 경비	5,557	5,557	7,309	1,752	31.5
	양성평등정책 지원	100	100	203	103	103.0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법무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개선 사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24억원 증가한 1,035억원이다.

[2020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결산	2019		2020 계획안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95,564	101,102	101,102	103,543	2,441	2.41
지출	95,562	101,102	101,102	103,543	2,441	2.41

자료: 법무부

1-1. 기금 수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은 벌금, 구상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¹⁾

동 기금의 2020년도 수입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벌금 세입을 기반으로 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금 수입액의 79.6%에 해당하는 82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인 ‘기금예수금’ 1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2020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결산	2019		2020 계획안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일반회계전입금	80,110	82,440	82,440	82,440	0	0.0
기금예수금	0	0	0	10,000	10,000	순증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2,281	15,006	15,006	7,172	△7,384	△49.2
변상금	1,510	1,281	1,281	1,556	275	21.5
기타경상이전수입	1,431	1,949	1,949	1,949	0	0
기타재산수입	232	426	426	426	0	0.0
합계	95,564	101,102	101,102	103,543	2,441	2.41

자료: 법무부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요재원인 벌금 수납액이 감소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전입금’ 사업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2)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기금에 납입한 벌금 수납액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의 79.6%를 차지하는 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일반회계 전입금	82,440	■ 직전 3년 평균 벌금수납액×1.03×0.06

자료: 법무부

그런데 ‘일반회계전입금’ 사업의 기반이 되는 벌금 수납액 규모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³⁾의 영향으로 벌금 수납액의 감소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반회계전입금’ 산출방식을 계속 적용할 경우, 벌금 수납액 감소와 맞물려 향후에는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벌금 및 과료 사업의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수납액	1,409,531	1,342,139	1,215,520

자료: 법무부

2)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3)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동 기금의 지출소요가 전년대비 24억 4,100만원 증가하였음에도 ‘일반 회계전입금’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인 824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년대비 증가한 2020년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0억을 예수하는 ‘기금예수금’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로서,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기금 운용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⁴⁾

따라서 법무부는 기금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의존도 및 전입비율 조정, 기금 재원의 다양화 등 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실제로 2020년도 동 기금이 기금운영계획안의 지출 항목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이자상환’으로 1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다.

1-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사업 등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기금 지출 사업 중 일부는 별도의 소관부처에서 집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을 담당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20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결산	2019		2020 계획안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0,565	19,620	19,620	23,376	3,756	19.1
범죄피해구조금	10,307	10,000	10,000	10,708	708	7.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5,841	5,636	5,636	6,474	838	14.9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4,834	4,531	4,531	4,304	△227	△5
통화금융기관예치	6,185	5,459	5,459	2,698	△2,761	△50.6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877	1,086	1,086	1,112	26	2.4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749	874	874	1,029	155	17.7
기금관리비	52	51	51	52	1	1.9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이자상환	-	-	-	130	130	순증
성폭력 피해자 지원	26,995	31,345	31,345	31,382	37	0.1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및 지원	19,157	22,500	22,500	22,278	△222	△0.9
합계	95,562	101,102	101,102	103,543		

자료: 법무부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의 직접 지원 사업과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간접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지출사업비 중 간접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사업비에 비해 월등하며, 2020년에는 전체 지출액 1,035억원의 약 79.1%에 해당하는 796억원이 간접지원 사업에 편성되었다.

[연도별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간접지원 사업비	67,083	64,294	67,738	75,302	79,591
직접지원 사업비	19,613	20,001	20,266	20,290	21,072
합계	86,696	84,295	88,004	95,592	100,663

주: 기금관리비 등 사업비 성격이 아닌 금액은 제외
자료: 법무부

인건비, 운영비 등 간접지원 비용은 하방경직성 경비이므로, 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업구조의 변화가 없는 한, 전체 지출사업에서 직접지원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원 기관을 통해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주로 시행하는 간접지원 사업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해이전으로의 원상회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직접 지원 사업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 기금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기관으로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와 같이 간접지원 사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유사 중복 등 효율성 저해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기관 소관 부처별 비교]

구분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소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세부사업명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및 지원
예산액	74억 3,600만원	145억 8,300만원	211억 7,400만원
지원대상	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가해자(교육대상)
주요 사업내용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진단 및 치료 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응급상담 및 치료, 증거채취 및 법률구조 등	학대피해 아동 등에 대한 상담, 현장조사 등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유사·중복 해소 및 일부 간접지원 사업의 이관 등을 통해 간접지원 사업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범죄피해구조금과 같은 직접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교도작업특별회계법」(1961년 제정)에 근거하여 교정기관의 교도작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271억 7,700만원이다.

세입 예산안 중 대표적인 사업은 교도소 수입 748억 900만원(58.8%)과 예탁원금 회수 400억원(31.4%) 등이며, 세출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은 교도작업 549억 3,100만원(43.2%)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66억 3,300만원(44.5%)이다.

[2020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세입	118,233	126,817	126,817	127,177	360	0.3
교도소수입	65,847	74,809	74,809	74,809	-	-
예탁원금회수	43,642	42,000	42,000	40,000	△2,000	△4.8
세출	110,222	126,817	126,817	127,177	360	0.3
교도작업	51,997	53,517	53,517	54,931	1,414	2.6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45,000	56,376	56,376	56,633	257	0.5

자료: 법무부

2-1. 교도작업 정역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교도작업 사업¹⁾은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할 목적으로 수형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작업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4억 1,400만원 증가한 5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 7월말 현재, 전국의 교정기관에서 21,982명의 수형자가 교도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설보완 사업²⁾은 교도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업장 신·증축, 작업장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13억 1,100만원 감소한 9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교도작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도작업	51,997	53,517	53,517	54,931	1,414	2.6
시설보완	6,886	10,930	10,930	9,619	△1,311	△12.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형법」에 따라 작업 의무가 부여된 수형자 중 일부가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작업장 확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르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 또는 벌금 및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자는 작업(정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0

2)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2

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³⁾ 그러므로 법무부는 작업의무 수행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작업이 부적격한 수행자를 제외한 모든 작업의무 수행자에게 작업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작업의무가 부과된 수행자 중 일부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최근 5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7월말 기준, 작업적격 수행자 23,687명 중 1,705명은 작업장 부족 등의 이유로 작업장에 배정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정역집행률은 2019년 7월말 기준 92.8%로 전년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수행자 정역 집행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작업적격자	24,155	24,505	24,773	23,941	23,687
작업자	22,159	22,661	22,873	22,136	21,982
미작업자	1,996	1,844	1,900	1,805	1,705
정역집행률	91.7	92.5	92.3	92.5	92.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0년 시설보완 사업 예산안으로 96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4개 교도소 작업장에 대한 신·증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350명의 수행자가 추가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7월말 기준 미작업자가 1,705명임을 감안할 때, 350명 규모의 작업장 신설만으로는 정역집행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

3)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한 작업장 신·증축 계획]

(단위: 명, 개소)

작업장 설치기관	예정면적	작업예정인원	작업장 수
여주교도소	1,240㎡(375평)	100	3
천안교도소	1,240㎡(375평)	100	3
경북북부 제3교도소	1,240㎡(375평)	100	3
장흥교도소	620㎡(187평)	50	1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해 작업장 신·증축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작업 환경 미비로 인하여, 수형자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작업장 확충을 위한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적용할 필요가 있다.

2-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사업¹⁾을 통해 2020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의 44.5%를 차지하는 566억 3,30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다.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45,000	56,376	56,376	56,633	257	0.5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사업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동 사업의 총 세출예산액 대비 비중은 여전히 44.5%에 달한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8910-890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교특회계 총 세출예산액(A)	102,213	129,925	126,866	127,17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사업 예산액(B)	43,642	63,335	56,376	56,633
비중(B/A)	42.7	48.8	46.7	44.5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잉여 자금의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예탁에 따른 일정 이자수익을 얻는 형태로 회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지출소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유자금을 자체 보유하기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이 국가 전체 재정운용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그러나 정역집행률이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교도작업장 신·증축 및 교도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가 세출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법무부는 향후 작업장 장려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등 수형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세출예산을 배분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적정 규모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8년 말 기준, 출소 시에 수형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작업장장려금의 미지급액이 총 273억 8,700만원에 달하고 있고,²⁾ 최근 3년간 미지급 작업장장려금 규모는 매년 약 15억원씩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연도별 미지급 작업장려금 및 공자기금 예탁금]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미지급 작업장려금	20,634	23,492	25,927	27,387
공자기금 예탁규모	9,770	34,855	43,642	45,000

주: 연도말 누적액 기준

자료: 법무부

그러나 현재까지의 미지급 작업장려금 규모와 증가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예탁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교도 작업, 직업훈련 및 시설보완 사업에 재원을 추가 배분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전자공증 이용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¹⁾은 전자공증 도입·운영을 통한 법률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공증인 직무교육 등을 통한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600만원 증액된 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공증제도를 도입·운영 중인데, 내역사업인 ‘전자공증 시스템 운영’은 전자공증시스템 유지보수 및 화상공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559	714	714	740	26	3.64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362	478	478	470	△8	△1.67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화상공증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증 이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전자공증에 대한 홍보강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8-300

전자공증이란 공증인이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전자공증을 하더라도 촉탁인 등이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전자공증 이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화상공증²⁾’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증인을 대면하고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전자공증에 비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52억원³⁾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향후에도 전자공증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4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전자공증 이용 실적을 보면, 전체 공증건수 대비 전자공증 비중은 여전히 0.02~0.04% 수준으로 전자공증 이용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화상공증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이후의 실적 역시 이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전자공증 실적]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공증건수	1,116,884	1,103,811	1,093,066	584,487	517,898	575,507
전자공증 건수	151	364	321	146	226	126
전자공증 비중	0.01	0.03	0.03	0.02	0.04	0.02

자료: 법무부

2) 「공증인법」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언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3) 전자공증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약 20억원,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에 약 32억원 집행

화상공증 시스템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화상공증 도입으로 인해 전자공증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와 같이 전자공증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2018년에 실시한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들 중 화상공증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4%에 달하여 전자공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화상공증시스템은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경과한 것으로 그동안은 관련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였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상공증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홍보 영상의 유튜브 게재 등 초보적인 수준의 홍보를 진행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화상공증을 포함한 전자공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전자공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공증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¹⁾은 난민, 외국인체류자 등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한 128억원 편성되었다. 동 사업 예산안 중 난민관련 내역에 편성된 금액은 24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7,500만원 증액되었다.

[2020년도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1,238	12,337	12,337	12,800	463	3.8
난민심사 역량강화	0	0	0	57	57	순증
난민심사 통역비	742	953	953	1,124	171	17.9
난민소송 출장비	33	35	35	35	0	0
난민조사관활동비	122	142	142	142	0	0
난민생계비 지원	817	792	792	839	47	5.9
난민신청자 급식비용 등	282	270	270	270	0	0
소계	1,996	2,192	2,192	2,467	275	12.5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연도별 난민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에 걸맞은 난민심사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3-301

법무부가 1994년 최초로 난민접수를 시행한 이래로 연도별 난민신청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6,173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 신청자인 9,942명 대비 6,231명(62.7%) 증가한 것이며, 2019년 8월말까지 9,278명이 신청하여 201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이래 전체 난민신청자 누계는 총 58,184명이다. 현행 「난민법」에서는 난민불인정 결정은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²⁾ 1차 심사 후 이의신청을 제기(1차 심사 후 30일 내)하는 수도 상당하여 2019년 8월 현재 기준 누적 이의신청 제기 수는 22,199건에 달한다.

2019년 8월 기준 전체 난민신청 58,184건 중 23,520건(1차 20,144건, 이의신청 3,376건)이 심사미완료 상태이다.

[연도별 난민신청자 및 심사 현황]

(단위: 명, 건)

연도	난민신청		심사완료건수	
	1차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
1994~2014	9,539	4,307	5,888	3,231
2015	5,711	3,262	4,244	1,995
2016	7,541	5,346	6,329	4,341
2017	9,942	3,754	5,218	4,531
2018	16,173	3,121	4,299	2,610
2019. 8.	9,278	2,409	3,397	1,724
합계	58,184	22,199	29,375	18,432

자료: 법무부

만약 심사미완료 상태로 남은 난민신청 건이 감소하지 않으면, 신규 난민신청과 맞물려 심사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7년에는 1차심사 1건당 평균 6.9개월이 소요되던 것이 2018년에는 10.6개월, 2019년 8월말 기준으로는 12.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³⁾

2)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에 난민심사 유형별 분류기준을 정비하였으므로, 2016년 이전 연도의 심사소요기간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⁴⁾ 난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난민 신청자의 평균 체류기간도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행정 비효율로 인하여 난민신청자의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난민심사 인력을 충원하여, 2019년 현재 91명의 난민심사 인력을 확보하였다.

2019년 현재 난민심사 인력은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인력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다. 다만, 난민법에 따라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두도록 하고 있는 난민심사관(5급 이상)은 전국에 4명에 불과하여 심사담당 인력이 면접 등을 수행하더라도 난민심사관이 제때에 면접 결과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전체 난민 신청 건수의 58,184의 약 38.2% 달하는 22,199건이 이의신청 건에 해당함에도 현재 난민심사 인력 91명 중 이의신청 심의 지원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인력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법무부는 단순 증원을 넘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난민전담인력 현황]

(단위: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난민전담인력	18	18	21	31	37	91
이의신청 심의 지원 인력	5	4	5	5	6	12

자료: 법무부

다만, 난민심사기간을 축소하는 것에만 집중할 경우 자칫 심사부실⁵⁾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실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난민심사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5) 법무부는 2017년에 부실심사가 의심되는 난민심사 사례를 조사하여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 및 재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가. 현 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¹⁾은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질환, 마약·약물 중독,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 범법자 등을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국립부곡법무병원)에 수용하고, 치료재활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9,000만원 증액된 76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7,363	7,432	7,432	7,622	190	2.6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인력확보를 통해 유휴병상 최소화하여, 치료감호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및 치료를 실시하는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법무부는 1987년부터 충남 공주에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국립부곡병원 내 1개 병동(50개 병상)을 부곡법무병원으로 지정하였다. 2019년 현재 국립법무병원과 부곡법무병원에 치료감호를 위해 지정된 병동은 총 23개이며 최대 수용정원은 1,250명이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634-300

국립법무병원과 부속법무병원을 포함한 치료감호소의 수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치료감호소 수용현황]

(단위: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7.
수용인원	1,187	1,212	1,116	1,093	1,043	1,019

자료: 법무부

현행 「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 2인이상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인당 4.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병동의 1인당 입원실 면적은 약 3.36㎡에 불과하다.

이는 유희병동 발생으로 인한 과밀수용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희 병상 없이 운영할 경우 입원환자 1명당 수용면적은 약 4.3㎡로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8월 기준, 치료감호 목적으로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22개 병동 중, 병동 운영인력 부족으로 18개 병동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부족에 대해, 법무부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면서 인력부족이 발생하여 부득이 4개의 유희병동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2교대에서 3교대로의 근무형태 전환이 인력부족을 야기할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근무형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전체 병동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총 36명의 간호사(1개 병동 당 9명)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치료감호 관리 인력 확충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치료감호 소운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¹⁾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매년 500명 내외 발생하고 있다는 점,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병역거부자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약 540명이 복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건설비, 피복비, 급식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²⁾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 규모는 259억 2,600만원이다.

[2020년도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	-	-	25,926	25,926	순증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대체복무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 편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531-304

2) 대체복무자의 인건비는 교도소운영 인건비(7002-103)사업의 기타직보수(110-02목)에 35억 6,100만원이 별도 편성

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³⁾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 4. 29.)과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등에서 36개월 합숙근무하도록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19. 4. 25.)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들 법안은 2019년 9월말 현재 까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 사업에 편성된 항목 중에서 대체복무자 합숙시설 등 대체복무 운영 시설 신축을 위한 건설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는 241억 3,900만원으로, 동 사업 전체 예산 259억 2,600만원의 93.1%에 달한다.

2020년 대체복무인원 합숙을 위한 건설비 편성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신축과 증축 공사 각 1건, 리모델링 공사 11건이다. 법무부는 동 시설 공사를 통해 대체복무자 교육 및 합숙 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 건설비 예산안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기관	수용인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비고
신축	교육원	80	5,562	0	59	수용인원과 별도
증축	영월(교)	45	2,021	0	21	
리모델링	의정부(교)	55	756	27	9	
	부산(교)	50	1,355	48	16	
	포항(교)	50	1,085	39	12	
	대구(구)	40	1,142	41	13	
	대전(교)	105	2,205	79	25	
	천안(교)	50	2,338	83	27	합동운영
	천안(개)	30				
	충주(구)	25	1,379	49	16	
	목포(교)	50	1,963	70	22	
	군산(교)	50	2,037	73	23	
	안동(교)	35	1,475	52	17	
합 계		585	23,318	561	260	

주: (교)교도소, (구)구치소, (개)개방교도소
자료: 법무부

3)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므로, 관련 법률의 연내 법률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등이 아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 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2019. 4.23,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제출 법안이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률이 개정 후 시행이 지체될 경우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규모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몰수금 및 추징금 사업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7억 4,300만원 증가한 1,14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몰수금 및 추징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몰수금 및 추징금	122,372	111,163	111,163	114,906	3,743	3.4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범죄수익환수에 역량을 집중하여 향후 몰수금 및 추징금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48조²⁾에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정주환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56 - 562

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수납실적은 가장 높았던 2017년도의 수납률이 74.1%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연도별 몰수금 및 추징금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154,757	168,839	168,839	168,839	168,839	111,163
수납액	98,802	117,170	97,183	125,164	122,372	-
수납률	63.8	69.4	57.6	74.1	72.5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추징금의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이른바 ‘대우그룹의 외화 불법 반출 사건’에 따른 추징금 22조 9,46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추징금 집행 실적은 2~3%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징금	27,028	28,986	31,319	35,524	39,922
집행액	938	977	841	1,105	1,103
집행률	3.47	3.37	2.69	3.11	2.76

주: 추징금은 대우사건 추징금 22조 9,466억원을 제외한 금액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징금의 경우,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대체집행 방법이 사실상 부재하고, 납부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집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사건 등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등을 환수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이 설치된 만큼, 몰수금 및 추징금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관부서·기관과의 상호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은닉재산 추적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 추적·환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1

현 황

법제처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법제처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411억 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9억 2,900만원(13.6%) 증가하였다. 한편, 법제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0년도 예산안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2,537	36,179	36,179	41,108	4,929	13.6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처

2020년도 법제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인허가, 제재처분 등 행정 작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학계·출연연·사법부·입법부 등 전문가 합동 회의 운영과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분야별 연구비 및 법 제정에 따른 법제정비 연구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② 한-인도네시아 MoU체결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법제기관 구축’을 위한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연구비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 개최 등의 신남방국가 행정 분야 협력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

2020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제정비 연구용역을 2020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예정으로서 행정기본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2020년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연구용역의 수행시기 또는 행정기본법안의 제출까지의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0년도에 한-인도네시아 MoU체결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은 인도네시아에 일원화된 법제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구용역 결과를 세미나로 발표하는데 있어 보다 면밀한 집행 계획을 세워 예산이 불용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6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은 인허가, 제재처분 등 행정작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학계·출연연·사법부·입법부 등 전문가 합동 회의 운영과 행정기본법 제정관련 연구 및 법 제정에 따른 법제정비 연구를 위한 사업이다.

[법제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행정기본법제 개선	646
합 계		646

자료: 법제처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법령심사지원,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등이 있다.

① 법령심사지원 사업은 적극행정 법제 기준을 공공부문에 신속히 확산시키기 위한 법제업무역량강화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은 한-인도네시아 MoU체결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기관 구축’ 협력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법제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법령심사지원	300	300	474	174	58.0
	외국법제기관교류	140	140	484	344	245.7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법제처

1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¹⁾은 인허가, 제재처분 등 행정작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도 동 사업 예산안 규모는 6억 4,600만원이다.

[2020년도 행정기본법제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행정기본법제개선	-	-	-	646	-	순증
일반연구비	-	-	-	350	-	순증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 시기를 앞당기거나, 행정기본법안 제출 시기를 포함한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지만,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신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공통 제도가 수백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4-302

개의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중앙부처·지자체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초안)을 마련하고, 2020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

1. 추진기반 마련 및 중앙부처·지자체 협의(~2019년 12월 중)
○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 및 자문단 구성
○ 중앙부처·지자체 협의 및 공청회 실시
2. 행정기본법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2019년 12월말)
3. 제정안 정부입법 추진(2020년 상반기)
4. 개정사항 정부입법추진(2021년 이후)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법제처는 2020년에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분야 및 조문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동 사업 예산안 6억 4,600만원의 54.2%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을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였다.

법제처는 1개 과제당 평균 5,000만원의 비용으로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기본법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주제(안)]

연번	연구용역 주제 및 내용
1	인허가 등의 원칙 및 인허가 의제 분야 법령 정비
2	행정계획(새로운 행정작용 도입) 분야 쟁점 및 해외 집행 실태 조사
3	행정계약(새로운 행정작용 도입) 분야 쟁점 및 해외 집행 실태 조사
4	공표의 원칙·기준 및 국내외 집행 실태 조사
5	행정강제의 원칙·기준 및 절차(대집행,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등 포함)
6	대행의 원칙·기준 및 절차
7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사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앞서 소개한 대로, 법제처는 2019년말 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정부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 주제와 규모, 그리고 연구용역 실시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고려할 때,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의 7개 과제 전부를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시 말해, 2020년 동 사업의 연구용역은 행정기본법령안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률안 제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나, 이후에도 하위법령 및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연구용역 주제들은 행정법령의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안 제출 전에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시기를 앞당기거나 행정기본법안 제출 시기를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일부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¹⁾은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를 비롯한 법제관련 국제 교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4,400만원 증가한 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년대비 증액된 3억 4,400만원 중 3억 400만원은 2020년에 신규 내역으로 편성된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 사업’에 편성된 금액이다.

[2020년도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외국법제기관 교류	127	140	140	484	344	245.7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	-	-	-	304	304	순증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관련 연구용역의 발표를 위한 세미나 비용을 편성한 만큼, 해당 비용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은 일원화된 법제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대한민국 법제처 간의 양해 각서 체결(2018년 9월)을 토대로, 2020년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²⁾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4-301

2) 2018년에는 ‘외국기관법제교류’ 내역사업에서 인도네시아와의 법제 협력을 위해 1,600만원을 집행하였다.

법제처는 ① 신설 예정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구성 등 업무절차 수립을 위한 협력, ②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의 역량강화 사업, ③ 법령 관련 시스템의 정비 소요 파악 및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동 내역 사업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교류·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의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법제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연구용역 결과발표 세미나를 위한 비용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로 1억 4,200만원,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비목	금액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관련 연구용역	연구용역비(260-01)	150
연구용역 결과발표 세미나 개최	일반용역비(210-14)	92
	임차료(210-07)	50
국외여비	국외여비(220-02)	12
합계	-	304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법제 전반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므로 특정 법제 분야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다 높은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지체류 비용 등을 고려하여 1억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제처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연구용역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세미나 개최 등 행사 역시 국제교류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예산 편성 자체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금액에 대한 면밀한 집행 계획을 세워 불용되거나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국제교류사업이므로 상호주의에 따라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측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제처는 이를 감안하여 해당 사업 추진 시 인도네시아 측이 집행하여야 할 비용까지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1

현 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감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감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7,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2020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53	475	475	475	-	-

주: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감사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376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2,400만원(3.9%) 증가하였다.

[2020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4,199	132,418	132,418	137,642	5,224	3.9

주: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한편, 감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기관 사무와 공무원 직무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①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에 적극 동참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되, 절감재원은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소요재원으로 활용하였고, ② 감사원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감사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20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감사원은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이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이 있다.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에는 감사원 제1별관 재건축 관련 부대경비(임차보증금, 임차료 등), 감사교육원 제1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감사원 어린이집 설치공사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37억 8,900만원(157.9%) 증액되었다.

[감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2,400	2,400	6,189	3,789	157.9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감사원

II

개별 사업 분석

1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가. 현 황

감사원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¹⁾의 2020년 신규내역사업으로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준공 후 46년이 경과한 제1별관 건물을 재건축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23억 8,600만원이다.

[2020년도 제1별관 재건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989	2,400	2,400	6,189	3,789	157.9
제1별관 재건축	0	0	0	2,386	2,386	순증

자료: 감사원

나. 분석의견

감사원은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이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수행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0억 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3년(2020~2022년)이다. 노후화된 감사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3-309

원 본원의 4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안전성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2018년 12월)한 결과, 제1별관(1972년 준공)의 경우 1983~1984년 증축부위가 부동침하로 인해 수평변위가 최대 95mm 진행되는 등 건물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D등급)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기획재정부가 제1별관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2020년 계획액에 실시설계비 11억 9,900만원, 철거비 6억 300만원, 공사비 5억원 등 2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제1별관 재건축 사업 관련 국유재산관리기금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시설계비	1,199	1,199	0	0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603	603	0	0
공사비	22,664	500	16,542	5,622
감리비	1,489	0	1,117	372
시설부대비	52	0	39	13
합 계	26,007	2,302	17,698	6,007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제1별관 재건축에 따라 기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3개국, 180여명)이 제1별관 준공까지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 임차에 소요되는 보증금(13억 7,400만원), 임차료 및 관리비(7억 3,000만원), 이사비용(4,500만원), 내부공사 비용(2억 3,700만원) 등 제반비용 총 23억 8,600만원을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업체 선정 및 철거 준비에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임차료를 4개월분 편성하였으며, 임차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 등은 2019년 4월 기준 서울 소재 36개 대형사무실(임차면적 2,000㎡ 이상)의 임대시세 조사 결과 평균단가를 적용하였다.

[2020년 제1별관 재건축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210-01목)	사무실 이사비용: 15,000천원 ¹⁾ × 3개 국 = 45,000천원	45
임차료(210-07목)	사무실 임차료: (임차료 단가 23,720원 + 관리비단가 10,058원 ²⁾) × 5,400m ³) × 4월 = 729,605천원	730
공사비(420-03목)	임차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등: 172,000천원 임차사무실 통신공사: 65,050천원	237
무형자산(440-00목)	사무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단가 254,431원 ³⁾ × 5,400m ³) = 1,373,927천원	1,374
합 계		2,386

주: 1) 2017년 특별조사국(1개국) 이전 시 이사비용 15,000천원 적용

2) 2019년 4월 기준 서울 소재 36개 대형사무실(임차면적 2,000m² 이상)의 임대시세 조사 결과
평균단가 적용

3) 2015~2017년 특별조사국(1개국) 저동빌딩 임차면적 1,797m²의 3배 적용

자료: 감사원

동 사업은 건물의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사업계획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가 4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재건축 공사업체 선정 및 철거 계획 수립이 2020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물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 사무실 선정 및 이사 등의 절차를 적시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원은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동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

현 황

가. 총수입 · 총지출

대법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 및 1개 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9,23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23억원(3.6%) 증가하였다. 회계 ·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336억원, 등기특별회계 3,058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837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63,840	825,835	825,835	839,417	13,582	1.6
- 일반회계	405,370	526,161	526,161	533,570	7,409	1.4
- 등기특별회계	258,470	299,674	299,674	305,847	6,173	2.1
기 금	54,476	64,968	64,968	83,693	18,725	28.8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4,476	64,968	64,968	83,693	18,725	28.8
합 계	718,316	890,803	890,803	923,110	32,307	3.6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조 15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02억원(5.8%) 증가하였다. 회계 ·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7,117억원, 등기특별회계 2,408억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631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대법원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764,487	1,852,831	1,852,831	1,952,478	99,647	5.4
- 일반회계	1,539,306	1,622,520	1,622,520	1,711,679	89,159	5.5
- 등기특별회계	225,181	230,311	230,311	240,799	10,488	4.6
기 금	45,475	52,565	52,565	63,122	10,557	20.1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45,475	52,565	52,565	63,122	10,557	20.1
합 계	1,809,962	1,905,396	1,905,396	2,015,600	110,204	5.8

자료: 대법원

나. 세입·세출예산안

대법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9,42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71억원(3.0%)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01억원, 등기특별회계 3,325억원이다.

[2020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05,370	600,795	600,795	610,086	9,291	1.5
특별회계	284,347	314,674	314,674	332,466	17,792	5.7
합 계	689,717	915,469	915,469	942,552	27,083	3.0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44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70억원(5.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7,117억원, 등기특별회계 3,325억원이다.

[2020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39,306	1,622,520	1,622,520	1,711,679	89,159	5.5
특별회계	242,065	314,674	314,674	332,466	17,792	5.7
합 계	1,781,371	1,937,194	1,937,194	2,044,145	106,951	5.5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대법원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만 구성된다.

대법원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57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412억원(55.2%) 증가하였다.

[2020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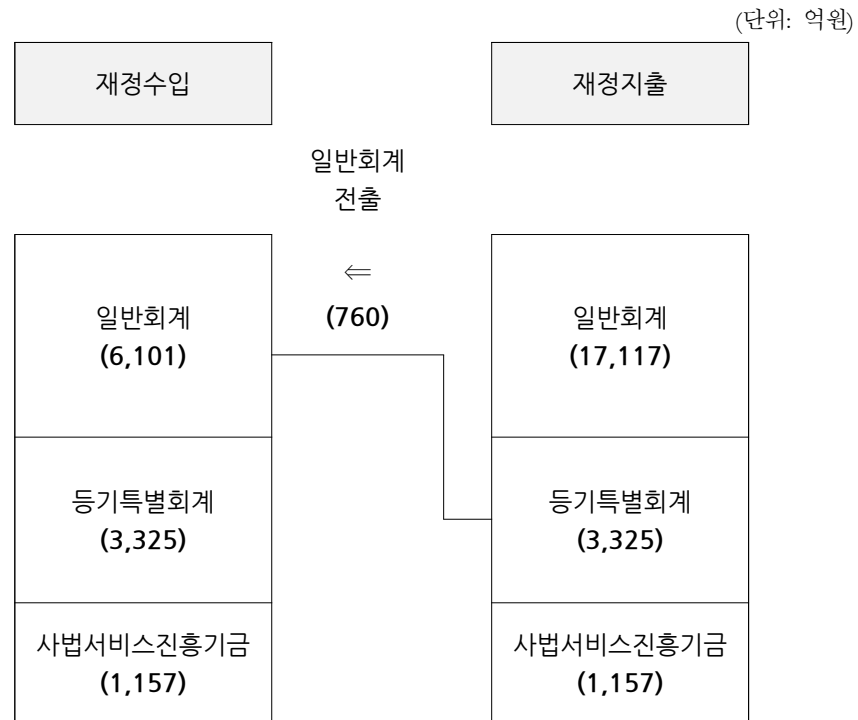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65,121	74,567	74,567	95,695	41,175	55.2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라.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 760억원이 전출된다.



주: 총계기준
자료: 대법원

2020년도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노후화된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판 및 등기업무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으며(차세대 전자소송 107억원, 미래등기시스템 131억원,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24억원) ② 사건의 충실한 검토 및 국민에게 편리한 사건기록열람·복사 환경 구현을 위한 사건기록전자화사업이 확대되었으며(2019년 57억원 → 2020년 77억원), ③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 강화를 위한 상근조정위원 확대(2019년 5억원 → 2020년 14억원), ④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원도서관 장서확충 등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10억원) 되었다.

2020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재원을 분리 편성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성과관리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통합적 사업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입의 정확한 추계와 일반회계 전출 사업의 적절한 편성·집행 등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근조정위원제도 확대는 수당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 제도운영의 성과에 대한 분석, 각급 법원의 조정위원제도 운영 현황의 파악 및 정비 등 체계적인 제도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262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은 낙후된 전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법관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심리에 집중하여 충실한 재판 진행여건을 마련하여, 형식적·절차적 업무에 대한 자동화 지능형 법원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이다.

등기특별회계 사업 중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은 종이기반의 등기업무 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등기 소단계의 부실등기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 중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구축’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판결문, 사법통계 등 다양한 사법정보를 공개하여 법원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 및 정보연계로 다량의 서류제출을 간소화 하는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대법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항공안전기술원출연	10,719
등기특별회계 (1개)	제주공항 시설개선	13,13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개)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2,427
합 계		26,276

자료: 대법원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 중 ‘연수원운영지원’ 사업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운용’ 사업이 있다.

① ‘연수원운영지원’은 노후화된 기숙사 보수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 및 스마트 강의실 구축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2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② ‘여유자금운용’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출연금 증대에 따른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306억 1,800만원 증액되었다.

[대법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연수원운영지원	3,674	3,674	6,401	2,727	74.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개)	여유자금운용	22,002	22,002	52,620	30,618	139.2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대법원

II

주요 현안 분석

1

대법원 신규 정보화사업 분석

가. 현 황

대법원은 2020년도 일반회계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¹⁾ 예산안으로 107억 1,900만원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²⁾ 계획안으로 24억 2,7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등기특별회계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³⁾ 예산안으로 13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0년도 대법원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안 및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예산안·계획안(B)	증감	
재원구분	세부사업명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A)		B-A	(B-A)/A
일반회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0	0	10,719	10,719	100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0	0	2,427	2,427	100
등기특별회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0	0	13,130	13,130	100

자료: 대법원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2)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30-301

3) 코드: 등기특별회계 1334-307

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및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및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스마트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사법정보화 사업 마스터플랜 하에 동시에 병행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및 지능형 정보통신기술을 법원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사법수요자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 사법정보화 장기계획 TFT의 기초연구 수행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이하에서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및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는 전체 정보화사업을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하기로 한다.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총사업비	- 2,610억 6,500만원(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 ※ 구축비(예비비제외) 1,419억 6,600만원, 구축 이후 5년간 유지보수비 1,190억 9,900만원	
사업기간	- 시스템 구축: 2020년부터 2023년	
주요내용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 지능형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 지능형 법관업무 지원 - 소송절차별 업무지원시스템 전면개편 - 데이터 통합아키텍처 구축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 사법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사법통합민원시스템 구축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스마트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통합적으로 산출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2,610억 6,500만원이며,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기간은 2020~2023년이다.

4) 대법원의 연차별 소요예산 배분(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스템 순구축비 기준으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1,049억 6,800만원,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369억 7,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법원은 일반회계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하여 지능형 통합 검색서비스 구축, 지능형 법관업무 지원, 소송절차별 업무지원시스템 전면개편, 데이터 통합아키텍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하여 사법정보공개시스템 및 사법통합민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은 종이 기반의 등기업무 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모든 등기업무 단계에서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의로의 개편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진단 및 발전 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총사업비	- 3,362억 400만원(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 ※ 구축비 등(예비비제외) 1,110억 8,600만원, 구축 이후 5년간 유지보수비 2,251억 1,800만원
사업기간	- 시스템 구축: 2020년부터 2024년
주요내용	- 지능형 등기업무환경 구축 - 전자광역등기체계 구축 - 사전조사시스템 구축 - 등기신청서류 전자화 및 영구보관 - 등기신뢰도 평가체계 구축 - 등기문서 집중관리 - 법인등기기록 편제 개편 -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 - 법인원스톱서비스 구축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으로 3,362억 400만원이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기간은 2020~2024년이다.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하여 지능형 등기업무환경 구축, 전자 광역등기체계 구축, 사전조사시스템 구축, 등기신청서류 전자화 및 영구보관, 등기 신뢰도 평가체계 구축, 등기문서 집중관리, 법인등기기록 편제 개편, 등기정보통합 공유체계 구축, 법인원스톱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1.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

가. 현 황

대법원에 따르면,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기간의 연차별 재원 투입계획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연차별 재원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10,719	81.5	25,661	68.6	35,505	74.5	33,110	75.7	104,995	74.0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2,427	18.5	11,746	31.4	12,169	25.5	10,629	24.3	36,971	26.0
합계	13,146	100	37,378	100	47,674	100	43,739	100	141,966	100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재원을 분리 편성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성과관리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통합적 사업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을 구분하여 일반회계에 ‘사법업무전산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단위사업과 동일한 명칭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였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대법원은 사업의 시급성과 한정된 국가재원을 고려하여 전체 정보화사업 중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분리하여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편성체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회계	사법정보화운영	사법업무전산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법정보화운영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일반회계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시스템 간 연계와 데이터 기반의 공유를 바탕으로 설계·구현되는 총체적인 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므로 통합적 사업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일반회계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통합 아키텍처 구축은 전체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이 하부구조로서 공유하는 통합데이터 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지능형 통합검색서비스 구축은 전체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 구현에 활용되는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합발주 방식으로 일반회계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원이 분리된 사업의 통합발주가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 편성하여 독립적인 재원과 예산편성체계 하에서 추진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추진의 절차나 공정관리, 재원의 운영,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추진과정에서 전체 정보시스템 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체계적 과제 수행이나 성과관리, 재원의 조정 및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 등 통합적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재원을 분리 편성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통합적 사업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원 운용 문제

가. 현 황

대법원에 따르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기간의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은 다음과 같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3,130	19,667	29,135	21,855	25,252	109,039

자료: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투입할 계획인 등기특별회계 재원 규모는 구축기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9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21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스템 구축 이후 5년간의 유지보수비는 2,252억원¹⁾ 수준으로 예상된다.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수입의 정확한 추계와 일반회계 전출 사업의 적절한 편성·집행 등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재원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2014~2018년도) 등기특별회계 잉여금이 연평균 31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는 구축기간 동안 연평균 218억원 정도이므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시스템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2,251억 8,000만원

[등기특별회계 2014~2018년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입(A)	281,031	325,106	282,057	283,199	284,349
면허료 및 수수료	239,593	278,736	248,256	240,935	243,137
전년도이월금	34,447	39,216	23,411	28,112	25,877
관유물매각대 등	6,991	7,154	10,390	14,152	15,335
세출(B)	241,815	301,695	253,945	257,322	242,065
인건비	98,732	102,788	107,870	111,277	111,534
기본경비 등	19,233	17,347	18,457	21,533	25,707
등기업무지원	19,571	19,711	21,382	18,725	19,656
등기소신증축	15,044	28,716	14,810	18,251	36,387
등기업무전산화	54,234	54,624	51,424	47,865	48,781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35,000	78,510	40,000	39,671	0
잉여금(A-B)	39,216	23,411	28,112	25,877	42,284

주: 기본경비 등은 등특기본경비와 건강보험부담금, 공무원연금기금부담금 등을 합한 금액임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등기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인 2027년말 이내에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먼저, 등기특별회계의 주수입원인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의 과다편성 문제를 개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등기특별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은 최근 5년간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수납실적이 2,400억원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는데,²⁾ 향후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의 과다편성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경기 등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통하여³⁾ 등기특별회계 세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2019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예산은 2,883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8월말 현재 수납실적은 1,604억원(55.6%)에 머물고 있어 당초 계획한 수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등기특별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은 부동산 경기 등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등 안정성 측면에 한계가 있다.

[등기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예산(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14	274,336	239,593	239,593	87.3
2015	282,570	278,736	278,736	98.6
2016	291,040	248,256	248,256	85.3
2017	291,427	240,935	240,935	82.7
2018	331,344	243,138	243,137	73.4

자료: 대법원

다음으로, 향후 일반회계 전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잉여금을 관리·운용할 필요가 있다.

등기특별회계는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⁴⁾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2018년도를 제외하고⁵⁾ 350억원에서 780억원을 전출 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3억 4,800만원(1.8%)이 증액된 759억 8,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사업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출예산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2014	67,932	67,932	77,932	35,000	44.9
2015	78,510	78,510	78,510	78,510	100.0
2016	102,518	102,518	102,518	40,000	39.0
2017	94,303	94,303	94,303	39,671	42.1
2018	123,640	123,640	123,640	0	0

자료: 대법원

4)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5) 대법원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 누락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등기특별회계는 통상적인 특별회계와 달리 각급 등기소·등기과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⁶⁾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금 확보 등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이 크고, 등기특별회계를 통하여 등기소신증축과 같이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일반회계 전출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통하여 등기특별회계 세출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전국의 각급 등기소·등기과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각급 등기소·등기과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함께 편성하고 있는데, 2018년도 결산 기준 세출액은 1,372억 4,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7%에 달하는 상황이고, 주요사업 항목으로 분류되는 등기업무운영지원 사업도 일상적인 등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등, 등기소·등기과의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사실상 기본경비와 유사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지급 기준 정비 등 필요

가. 현 황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은 전문재판운영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 증액된 16억 8,200만원(전문심리위원 수당 2억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14억 8,200만원)이다.

[2020년도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액(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전문재판운영	33,375	12,969	12,969	13,937	668	5.2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 심리위원 운영	1,587	1,584	1,584	1,682	98	6.2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상근직역으로서의 근무형태와 실적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적용하고, 관련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44-407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전문분야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음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2007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검색 등 절차의 번거로움과 후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수당의 비현실성 등으로 활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도부터 의료분야,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은 2016.12.23. 대법관회의에서 정액수당 330만원 이내, 사건수당 사건 당 70만원 이내(5배 이내 증액 가능)로 의결한 이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개요]

구분	전문심리위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인원 (2019년 9월말 현재)	후보자 3,510명	서울고법(4명), 부산고법(2명), 대전고법(2명), 대구고법(2명), 광주고법(2명), 수원고법(2명)
근무형태	비상근	주5일 상근
근무장소	본인 사무실 등	법원내
분야	의료, 건축,토목,지적재산권,과학기술,환경,경제,부동산,사회과학,인문	의료, 건축
겸직여부	가능	불가
수당지급기준	1. 서면제출: 600,000원 2. 기일출석 진술: 700,000원 3. 서면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 800,000원	1. 정액수당: 3,300,000원 이내 (급식수당, 교통지원수당,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임근무수당) 2. 사건수당: 사건 당 700,000원 이내(5배 이내 증액 가능)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대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된 2017년도 이후 현재까지 월 900만원의 정액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 바, 이와 같은 대법원의 상

임전문심리위원제도 운영은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를 뿐 아니라,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관여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문심리제도 활성화라는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액 예산(안)에 대한 산출 근거에 있어서는 반대로 실적수당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왔는 바, 이와 같은 예산(안) 산출 방식은 예산 소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제도운영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월 정액 900만원의 수당 지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소요 예산은 15억 1,200만원(14명×12월×9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4억 8,200만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바, 2020년도에는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수당액을 지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예산안 산출근거]

구분	산출근거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14명 × 12월 × 12.6건 ¹⁾ × 700천원 ≒ 1,482백만원

주: 1) 2019년 8월말 현재 상임전문심리위원 1인당 월평균 관여건수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방식을 상근직역으로서의 근무형태와 실적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적용하고, 관련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정제도지원 사업¹⁾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08억 3,600만원이다.

동 사업에는 상임조정위원, 일반조정위원 및 상근조정위원 등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96억 9,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상근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은 전년 대비 189.3% 증가한 13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조정위원 수당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액(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조정제도지원	9,477	9,915	9,915	10,836	921	9.3
각급 법원조정센터 운영	3,652	4,287	4,287	4,322	35	0.8
상임조정위원 수당	3,105	3,524	3,524	3,524	0	0
일반조정위원 수당	5,170	4,816	4,816	4,816	0	0
상근조정위원회 제도 운영 (상근조정위원 수당)	468	468	468	1,354	886	189.3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상근조정위원회 제도 확대는 수당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 제도운영의 성과에 대한 분석, 각급 법원의 조정위원회 제도 운영 현황의 파악 및 정비 등 체계적인 제도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2

대법원은 상임조정위원과 일반조정위원으로 구분하여 조정위원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18년도부터 ‘상근조정위원’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도에 9명의 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하였고, 2020년도 예산안에는 상근조정위원 15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수당 금액 8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근조정위원제도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하고 직무수행 법원에서 상근하면서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적 이해 없이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조정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정 성립 후에도 후속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 의식과 명망가 위주의 조정에서 전문가 위주의 조정으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되었다.

대법원은 상근조정위원제도의 긍정적인 운영 성과를 감안하여 동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²⁾

[조정위원제도 개요]

구분	상임조정위원	일반조정위원	상근조정위원
인원 현황 (2019.8월말 현재)	서울고등·중앙: 9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남부지법: 2명 서울북부지법: 2명 서울서부지법: 2명 의정부지법: 2명 인천지법: 2명 수원지법: 2명 대전지법: 2명 대구지법: 2명, 부산지법: 4명 광주지법: 2명 (총 34명)	사업가: 1,359명 변호사: 939명 교육자: 853명 법무사: 718명 의사: 411명 상업: 336명 공무원: 321명 회사원: 221명 건축사: 200명, 세무사: 116명 상담사: 92명, 회계사: 84명 감정평가사: 68명 변리사: 21 기타: 1,249명 (총 6,908명)	서울동부지법: 2명 수원지법: 2명 인천지법: 2명 의정부지법고양지원: 1명 대전지법: 1명 창원지법: 1명 (총 9명)

2) 대법원은 2018년도 기준으로 조정위원회(일반조정위원) 31.6%, 상임조정위원 27.7%, 상근조정위원 39%로 상근조정위원의 조정성공률이 높게 나타났고, 상근조정위원에 배당되는 사건의 고분쟁성·고난이도를 감안하면 그 실적이 월등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실한 조정사무수행보고서 작성 등 사실심 충실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조정담당판사 및 재판장들의 평가가 있으므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예산요구 시 50명의 상근조정위원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구분	상임조정위원	일반조정위원	상근조정위원
자격요건 (변호사)	필요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통산하여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 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 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불요	필요
근무형태	주5일 상근	비상근	주5일 상근
조정업무 수행 방식	-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조정절차 종결권) 보유	- 비정기적·간헐적으로 조정업무 참여 - 조정담당판사 또는 수소법원 조정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조정에 관여	- 대부분 책임조정 방식 으로 운용(조정절차를 대부분 주관한 후 조정담당판사에게 사무수행 보고) - 조정담당판사 또는 수소법원 조정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조정에 관여
겸직여부	불가	가능	불가
수당지급 기준	- 급식수당 월 30만원 이내, 교통지원수당 월 50만원 이내, 자료 조사 및 연구수당 월 50만원 이내, 관리업무 수당 월 100만원 이내, 상임근무수당 월 100 만원 이내, 조정수 사건당 20만원 이내 - 서울조정센터 위원장 월 1,000만원 - 서울 이외 조정센터장 월 950만원 - 법조경력 20년 이상 위원 월 900만원 - 법조경력 20년미만 위원 월 700만원	- 사건당 5만원 이내. 다만, 책임조정위원으 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건당 7만원	- 사건당 9.4만원 수준 * 책임조정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부분 고난이도 사건으로 2회 이상 조정기일 진행하며, 모든 사건에 조정사무수행보고서 작성

자료: 대법원

다만, 상근조정위원제도의 확대는 수당지급 방식의 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 각급 법원의 조정위원제도 운영 현황의 파악 및 정비 등 체계적인 제도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근조정위원은 겸직이 제한되고 지정된 근무장소에 상근하면서 조정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 건당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같은 수당지급 방식은 상임조정위원, 국선전담변호사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등 다른 상근직역에 대하여 기본보수 성격의 고정수당 등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대법원은 일정 건수(월 50건 수준 예정) 이상의 사건 배정을 통하여 상근조정위원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다른 상근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겸직이 제한되는 근무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조정사건 관여건수 또는 처리건수에 치우친 무리한 조정회부나 조정업무 수행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소수(9명)의 상근조정위원이 운영되는 가운데 통상적인 상근직역과 다른 수당지급 방식을 적용하여 2년 미만의 운영기간 동안 나타난 조정성공률 등 운영 성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점, 상근조정위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조정성공률은 책임조정 방식에 따른 조정업무 수행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근조정위원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한편, 일부 법원에서 이전부터 상근조정위원제도라는 명칭 하에 대법원의 상근조정위원제도³⁾와 상이한 내용과 방식으로 조정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⁴⁾ 이와 같이 동일한 명칭 하에 각급 법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바,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조정위원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대법원의 상근조정위원제도는 실질적으로 ‘조정전담변호사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4) 1주일에 요일별로 또는 3~4일 등 법원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되며, 2012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근조정위원으로 변호사 13명, 건축사 2명을 위촉한 바 있다. 한편, 2017년 전주지방법원은 변호사로 구성된 당직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소

1

현황

헌법재판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억원(603.8%) 증가하였다.

[2020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66	26	26	183	157	603.8

주: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530.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1.9억원(10.8%) 증가하였다.

[2020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2,608	47,876	47,876	53,068	5,192	10.8

주: 총계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재판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0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업무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개선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②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e사람 개발 등 정보화 예산을 증액하였다.

2020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부운영지원 사업에는 현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사업의 완공을 전제로 본관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의 본관청사 이전 사업 예산 2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다만, 전년도 사업 순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2019년도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사업 계획현액 147억 9,600만원 중 43억 9,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도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후속사업 예산도 일부 2020년도로 이월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증축청사 준공을 전제로 다수의 연계사업을 동시에 병행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차질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청사증축 사업의 불필요한 추가적 지연사유 발생 방지와 공정관리는 물론, 증축청사 준공을 전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헌법재판소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본부운영지원 사업 등이 있다.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본청사 도서관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별관 청사 사무공간을 본청사로 통합하기 위한 청사 리모델링, 30년이 지나 노후화 된 시설의 개선 등 물적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18억 9,800만원(38.3%) 증액되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본부운영지원	4,951	4,951	6,849	1,898	38.3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헌법재판소

II

개별 사업 분석

1

청사증축 연계사업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등 필요

가. 현 황

2020년도 본부운영지원 사업¹⁾ 예산안에는 본관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의 본관청사 이전 사업 예산 2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본관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의 본관청사 이전 사업 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본부운영지원	1,552	4,951	4,951	6,849	1,898	38.3
본관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의 본관청사 이전	0	51	51	2,280	2,229	4,371

자료: 헌법재판소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소는 청사증축 사업의 불필요한 추가적 지연사유 발생 방지와 공정관리는 물론, 증축청사 준공을 전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사업의 완공을 전제로 본관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의 본관청사 이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2-302

본관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의 본관청사 이전 사업은 현재 본관 청사 5층에 위치한 도서관과 1층에 위치한 민원실이 증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본관청사 3개층(1층·2층 및 5층)을 리모델링하여 업무공간을 확충·재배치하고, 현재 별관(민간건물 2개층 임차)에 위치한 부서를 본관청사로 이전·통합하려는 것으로, 본관청사 1층·2층은 별관에 위치한 부서의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5층은 헌법연구관실로 개조할 계획이다.

[본관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의 본관청사 이전 사업 등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예산액
본관청사 리모델링 및 이전	리모델링 공사	2,207
	시설부대비	8
	리모델링 관련 이전비	40
	감리비	25
	합계	2,280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본관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공사 발주 및 계약을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증축청사 준공예정 시기가 2020년 2월 중순경이고, 본관청사 5층에 위치한 도서관의 증축청사 이전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모델링 및 청사 외부창호 개선 공사는 2020년 4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사업은 설계유찰, 문화재 시굴 및 정밀조사 전환, 문화재 발굴에 따른 유구보존 심의 등의 사유로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어 준공시기가 당초 2018년에서 2019년 12월로 변경된 바 있으며, 2018년도에도 공사계약 및 착공 지연, 연약지질, 불량토사 등 토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현액 83억 7,100만원 중 64억 6,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19년도에는 전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계획현액 147억 9,600만원 중 43억 9,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액	집행부진(이월) 사유
2015	704	201	503	0	설계공모 유찰로 설계비 이월
2016	4,424	515	302	3,607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로 설계 및 공사계약 지연
2017	1,394	1,023	371	0	총사업비 조정 및 유적시설 대책 마련으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월(12월 착공)
2018	8,371	1,909	6,462	0	공사계약 및 착공 지연, 연약지질, 불량토사 등 토공사 지연
2019 (8월말현재)	14,796	3,895	4,396	0	전년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예상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2019년도 헌법재판소 본부운영지원 사업에는 청사증축 후속사업 예산으로 도서관의 증축청사 이전 등 소요경비를 포함하여 24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청사증축 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들 사업도 예산 일부를 2020년도로 이월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도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후속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8월말 현재)	이월 예상액
도서관의 증축청사 이전 등 추진	도서관 이전비 및 서가, 전자도서관 장비 구입 등	1,318	0	762
증축청사 시설 등 공사비	스피드게이트, 다목적실 음향설비 설치 등	264	0	264
증축청사 집기류 구입	사무집기류 구입	160	0	160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설치	전시기획 및 디자인설계, 전시실 구성·시공 등	602	0	315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	모빌렉 구입 등	117	0	111
계		2,461	0	1,612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증축청사 준공을 전제로 다수의 연계사업을 동시에 병행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차질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청사증축 사업의 불필요한 추가적 지연사유 발생 방지와 공정관리는 물론, 증축청사 준공을 전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홍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신 봉 진 예산분석관
정 주 완 예산분석관
민 성 철 예산분석관
박 은 형 예산분석관

지 원 | 이 정 아 행정실무원
이 근 영 자료분석지원요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10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금양문화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12-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